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20-04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

연 구 책 임 정 형 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연 구 지 원 정 요 한 (본원 위촉연구원)

박 정 인 (前, 본원 위촉연구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목 차

1 서론 ····· 01

2 이동노동 현황 및 법제도 분석 ····· 02

3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분석 ····· 10

4 이동노동자 직종별 사례분석 ····· 21

5 결론 ····· 25

연구요약

1. 서론

□ 우리나라의 많은 직종들이 그렇듯이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도 성별에 따라 분리된 경향이 나타남. 즉, 남성의 경우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등 운수 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가구(또는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학습지교사 등 방문교사, 영업 및 방문판매 관련 직종, 가스·수도·전기 등의 검침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같은 서비스직종 등이 해당됨.

□ 최근 경기도는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2019.4.29.). 지역의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본 연구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동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현황을 분석함. 둘째,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함.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과 보상, 이동노동 관련 현황, 안전과 건강,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정책수요 등임.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우선, 문헌연구를 실시함(법제도 분석, 선행연구 검토, 관련 자료 분석). 둘째,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직종은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 중 여성이 다수인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판매 종사자 관련 직종,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직종임. 설문조사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서 해당 직종에 일하는 만 20-64세 여성 중에서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여성임. 이에 따라 조사대상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특정 장소에 상주하여 일하는 경우(예, 신용카드 모집인이라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상주

하며 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체 표본은 400명이며, 각 직종별로 100명씩 할당함.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함.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9%임. 셋째,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조사대상 직종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5~7명씩 총 24명에 대해 집단면접을 실시함.

2. 이동노동 현황 및 법제도 분석

가. 이동노동자 개념과 관련 직종

□ 우리나라 법과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는 2019년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음. 동 조례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정의함. 이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도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동노동자를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에서는 이동노동자란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다만,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종을 나열하면서 예시하고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이동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로 제한함. 경기도와 제주도의 이동노동자 정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제한하지 않지 않고 '이동하는 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임금노동자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동노동자 개념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정의함. 따라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은 크게 가구(또는 사업체)를 방문하는 직종

과 가구를 방문하지 않는 직종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주로 가구를 방문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방문노동자' 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함. 방문노동자의 경우 장소를 이동하면서 특정 가구(또는 사업체)를 방문한다는 점에서는 이동노동의 성격이 있지만, 직종에 따라서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이동하면서' 일한다고 보기 어려운 직종도 있음. 이렇게 볼 때 이동노동자와 방문노동자는 서로 교차하는 개념이나 완전히 중복되는 개념은 아님.

□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을 총람하고 있는 한국직업사전에 '이동'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371개의 직업, '방문'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163건의 직업이 나옴. 선행연구 검토결과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직종에는 가구를 방문하는 직종이 많음.

□ 해당 직종이 포함된 직종 소분류 기준으로 취업자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동하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 특정 직종의 경우 대부분 남성으로 성별직종분리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선행연구 검토

□ 이동노동자 관련 직종에 관한 실태는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연구에서 다루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주로 "위탁사업자"로 간주되는데, 이와 관련한 직종 중에 이동노동을 하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이동노동 관련 직종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보호방안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 보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주로 남성다수직종인 배달 운수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이슈와 함께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 선행연구에서 이동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 중에서 이철 외(2015)는 '이동노동 종사자', 박찬임 외(2016)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 라는 개념을 사용함. 두 연구 모두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과 같은 운수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관련 연구를 진행함. 이철 외(2015)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일자

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방안을 검토함. 박찬임 외(2016)는 플랫폼을 이용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동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다음으로 주로 이동하며 일하는 직종 중에 여성이 다수인 직종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음. 우선, 경기도 여성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정형옥 외(2015)에서는 돌봄노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체에 출퇴근해서 일하는 전형적인 노동방식과 다른 이동노동자로서의 특성을 밝히고 있음. 한편, 서울시에서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근로환경 파악, 안전실태 및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최근 추진됨. 이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 으로서 가구를 방문해 일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함.

□ 한편, 최근 노동계에서는 방문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방문노동을 하는 직종에는 이동노동을 하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방문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안전보건, 작업중지권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함. 2017년 조사의 경우 남성이 다수인 방문설치 수리기사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방문설치 수리기사 외에도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학습지교사 등 여성다수직종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다. 조사대상 직종별 현황

1)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학습지교사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 중 여성다수직종에 해당함.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 개정)에 따르면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2545)는 학습지 방문강사(25451)와 교육 교구 방문강사(25452)로 구분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4.7만명, 기타 방문 교사는 4.3만명으로 추정됨. 이러한 방문교사들은 대부분 특정업체에 전속되어 일하고 있음. 학습지교사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었고, 기타 방문교사는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 경기도 학습지교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적용 통계임.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학습지교사 가입사업장수는 119개소이나, 이 중 적용제외 사업장수가 103개소로 전체의 86.6%를 차지함. 이 직종의 경기도 등록종사자는 9,336명이며 이 중 여성이 8,962명(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여성 학습지 교사 8,962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종사자는 2,001명으로 22.3%에 불과함.

□ 고용노동부는 학습지교사의 산재보험료와 관련해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하는데, 2019년부터 적용되는 월 보수액은 1,684,0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56,133원임.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5,150원(209시간 기준), 일급(8시간 기준)은 66,800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금액임.

2) 판매 종사자

□ 판매 종사자에는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이 다수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판매 종사자 중 직종 세분류 기준으로 제품 및 광고 영업원(5102),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5103),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5104), 방문판매원(5321) 중 이동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는 2008년,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은 2016년 7월, 방문판매원은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됨.

□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적용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종사자 현황을 살펴봄.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사업장수는 214개소이며, 이 중 적용제외 사업장수는 158개소로 전체의 73.8%를 차지함. 이 직종의 경기도 등록종사자는 6,125명이며 이 중 여성이 4,965명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함. 그런데 실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종사자는 416명으로 전체 등록종사자의 6.8%에 불과함. 실제 적용종사자 416명 중에서 여성은 373명임. 대출모집인의 경우 가입사업장수는 28개소이며, 이 중 적용제외 사업장수는 20개소로 전체의 71.4%를 차지함. 이 직종의 경기도 등록종사자는 768명이며 이 중 여성이 342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함. 그런데 실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종

사자는 22명으로 전체 등록종사자의 2.9%에 불과함.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료 관련해서 고시한 보수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우선,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의 월 보수액은 2,623,0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87,433원임.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 보수액은 2,183,000원, 일 평균임금은 72,766원임. 그리고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의 월 보수액은 1,944,0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64,800원임. 한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의 월 보수액은 2,638,0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87,933원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의 월 보수액은 1,756,0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58,533원임.

□ 다음으로 방문판매원 관련 현황임. 방문판매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하며, 판매원의 실적 따라 수당을 받는 일반 방문판매원은 약 4만여 명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은 7만여 명으로 추정됨. 이러한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11만 명)이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확대됨.

3)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 계기 검침원(99211)은 가스 · 수도 · 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전기 안전 점검원이 이에 해당함. 한편, 가스 점검원(99212)은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일을 함.

□ 경기도에는 6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있음. 경기도는 관련 법률에 의거 매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2019년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경기도)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6개 일

반도시가스 사업자별로 2019년 소요인원을 추정한 결과 총 필요인원은 1,714명이며 이 중 검침・점검원이 1,076명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함. 2019년 조정된 검침・점검원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기본급 기준 9,093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의 108.9%)이며,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교통비) 기준은 10,002원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0,000원, 2019년 기준)과 동일한 수준임. 검침・점검원의 통상임금은 민원기사(11,290원), 사무행정원(10,541원), 총괄관리직(16,280원)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4)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 마지막으로 기타 배달원(922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953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9999)에 포함된 직종임. 음료배달원은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의미함.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 제품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거나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수행함.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음.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임.

라. 이동노동자 관련 법제도

1) 법률

□ 이동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도가 다름.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주로 대인서비스 직종으로 감정노동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노동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과 제2항에 근거

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즉,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가 적합한 직무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직무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 A/S직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고, 휴일, 휴가도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제71조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 규정은 적용됨.

□ **산재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함. 이후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2012.5.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2016.7.1.)와 같이 9개 직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 전후에 불과함. 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률(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로 나타남. 한편, 2020년 1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기존의 9개 직종에서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로 확대함(2020년 7월 1일 시행). 기존의 학습지교사 직종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개정해 다양한 명칭의 기타 방문교사가 포함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함(제5조).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도 사업주로서 안전 및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를 의무를 부과함. 또한 동법 제77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2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26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함.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과 같음.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휴게시설,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관리, 사무실 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건물 개 · 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감정노동/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부는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가 포함됨.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17일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보호를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함. 또한 정부는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2018년 10월 18일 시행).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

□ 국내에서 이동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2019년 4월 경기도가 제정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초임. "이동노동자 쉼터" 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 복지 서비스 제공,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이동노동

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함.

□ 이후 부산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경기도의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 반면, 부산시와 서울시 강동구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로 차이가 있음. 쉼터 또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제주도가 가장 폭넓게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수립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는 2019년 4개 시군(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 향후 2021년까지 총 13개소 이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이동노동자 쉼터의 평가항목은 접근용이성(20점), 부지 및 건물 확보(10점), 사업수혜자 다양성(5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 사업추진 역량(30점), 기타(5점)로 구성됨. 사업수혜자 다양성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일반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수혜를 받을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함.

3.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분석

가. 일하는 시간과 보상

1) 노동시간

□ **주당 평균 노동일수 및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3일로 조사됨. 최소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3일이었고, 일주일 내내(7일)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주 5일이 56.8%로 가장 많았고, 주 6일도 3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주 4일(4.3%), 주 3일(2.3%), 주 7일(2.0%)로 나타남.

□ **주당 평균 노동시간**: 전체 평균 노동시간은 41.85시간으로 나타남. 노동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 20-40시간 이하가 53.5%로 과반을 차지했고, 다음은 주 41-52시간 이하(28.0%), 주 52시간 초과(13.0%), 주 20시간 이하(5.5%)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주 50.1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41.48시간), 판매 종사자(37.92시간),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7.85시간) 순으로 나타남.

□ **이례적인 노동시간 실태**: 응답자의 2.5%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3%), 판매 종사자(2%)로 나타남. 다음은 응답자의 60%가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85%로 저녁근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77%),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41%), 판매 종사자(37%)로 나타남. 다음으로 일요일에 일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5%가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일요일에 일한 경험이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판매 종사자 11%,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4%,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3%로 나타남. 다음으로 토요일에 일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57%가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토요일에 일한 경험이 86%로 가장 높았고,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편, 판매 종사자는 41%,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27%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한 달 중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33%가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3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2%), 판매 종사자(21%)로 나타남.

□ **노동시간 계산방법**: 응답자의 78.5%가 '정해진 노동시간은 없고 내가 재량껏 일한다'고 답변함. 그 외에는 '정해진 노동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주 40시간 등)한다'가 12.8%, '실제 일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가 8.5%로 나타남.

□ **출퇴근 시간**: 응답자의 52.3%가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다(고객방문시간 등에 따라 결정)'고 답변함. 다음으로는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이 32.8%,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이 15.0%로 나타남.

□ **소속 사업체 방문 횟수**: 소속 사업체가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소속 사업체 사무실 등)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

했음. 주 4회 이상이 50.8%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회(15.0%), 2회(13.0%), 3회(9.5%)로 나타남. 직종별로 살펴보면 판매 종사자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4회 이상이 각각 74%와 78%로 현저히 높았음.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4회 이상(38%), 2회(24%), 3회(20%) 순으로 나타남.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1회가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23%), 4회 이상(13%), 3회(4%) 순으로 나타남.

2) 임금(소득)

□ **보수체계**: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고정급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다른 직종은 실적급제가 88~96%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월 평균 소득**: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월 150-200만원 사이가 41.3%로 가장 많고, 다음은 250만원 초과(19.8%), 200-250만원 이하(17.8%), 100-150만원 이하(13.5%), 100만원 이하(7.8%)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조사대상 직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소득)이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현재 일자리에서 버는 월 평균 임금 중에서 차량운행비(기름값, 수리비 등), 보험료, 주차비, 교통비, 장비나 비품구입비(장갑, 클리너 등), 판촉비 등 일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실제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함. 실제 소득은 150-200만원 사이가 39.3%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0-150만원 이하(25.3%), 100만원 이하(12.8%), 200-250만원 이하(11.8%), 250만원 초과(11.0%)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부분 가입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낮았음.

나. 이동 관련 현황

1) 일한 장소

□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직종의 특성상 매일 일을 하는 장소는 고객의 집이 가장 많았음. 즉, 고객의 집에서 일한 횟수에 대해서 매일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 주에 여러 번이 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고용주(귀하의) 사업장에서 일한 빈도가 높게 나타남. 그 외의 장소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음' 이나 '드물게' 가 대부분을 차지함.

□ **판매 종사자**: 다른 직종에 비해 일한 장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였음. 즉, 판매 종사자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장, 고객의 사업장, 고객의 집, 커피숍 등 공공장소를 이동하며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집이 가장 빈번하게 일하는 장소로 나타남. 즉, 고객의 집은 매일이 66%로 과반을 차지했고, 한 주에 여러 번이 26%로 나타남. 자동차 등 교통수단 내에서 일한 경험도 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없음, 드물게 제외).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일한 경험은 한 달에 여러 번 이상이 7%로 나타났고, '드물게' 를 포함하면 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직종의 특성상 고객의 집과 실외(길거리 등)에서 일한 빈도가 가장 많았고, 고용주의 사업장과 고객의 사업장도 높은 빈도를 차지했음. 즉, 고객의 집, 실외(길거리 등), 고용주의 사업장, 고객의 사업장은 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빈번하게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외에도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일한 경험도 2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동하는 장소 범위**: 직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 많이 이동하지만, 30% 정도는 시군 단위까지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동시 교통수단

□ **이동수단**: 1순위는 자가용 이용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걸어서(18.5%)와 대중교통 이용(16.8%)이 비슷하게 나타남. 기타도 10.8%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에서 응답한 것으로 판매 전용 카트 등의 교통수단이 이에 해당함. 대부분의 직종에서 2순위는 걸어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대부분 1순위로 응답한 자가용 등으로 특정 장소에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인근의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임.

□ 직종별로 살펴보면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1순위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자가용 이용이 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걸어서(20%)와 대중교통 이용(20%)으로 나타남. 판매 종사자의 경우도 1순위 교통수단은 자가용 이용이 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29%)으로 나타남.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도 자가용 이용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걸어서가 28%를 차지함.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기타가 43%로 가장 높았는데, 여기에는 배달 전용 카트(야쿠르트), 이륜차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는 걸어서(24%), 자가용 이용(21%), 대중교통 이용(10%) 등으로 나타남.

3) 이동시간

□ **하루 평균 이동시간**: 고객 등을 방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곳으로 여기저기 이동하는 시간(대기시간 포함)은 하루 평균 3.85시간으로 조사됨.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4시간 미만이 4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6시간 미만이 29.0%, 6시간 이상이 20.5%, 2시간 미만이 7.8%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평균 4.5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4.28시간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는 3.38시간,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3.23시간으로 나타남.

□ **이동 중 남는 시간**: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이에 직종별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경우 시간여유 없이 다님(42%),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34%),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함(19%), 근처에서 배회함(5%) 순으로 나타남. 반면, 판매 종사자의 경우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이 48%로 과반에 가까웠고, 다음은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함이 38%를 차지함. 반면, 시간여유 없이 다님은 10%로 타 직종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비정기적인 고객과의 약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직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됨. 한편,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시간여유 없이 다님이 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함(29%),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12%)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도 시간 여유 없이 다님이 50%로 과반 정도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함(24%),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

를 처리함(23%)이 비슷하게 나타남.

□ **식사시간**: 일하다가 시간이 날 때 불규칙하게 먹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3.5%로 가장 높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22.8%로 나타남. 직종별로 살펴보면,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일하다가 시간이 날 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판매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동노동 관련 애로사항**: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음(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에 대한 항목의 점수가 높았음. 이는 고객 등과 기본적으로 시간을 약속하고 방문하는 타 직종과 달리 1차적으로 방문 후 부재 시 시간을 약속하는 직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됨. 판매 종사자는 일하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음. 학습지교사는 식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직종의 특성상 저녁 식사 시간에 주로 방문교육을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한편,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날씨, 미세먼지, 전염성 질환의 위험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음. 동 직종의 경우 날씨와 무관하게 매일 또는 정해진 시간에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한 항목들에서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다음으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점수가 높았음.

다. 안전과 건강

1) 직무스트레스

□ 항목별로는 보상부적절(57.5%)이 위험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업불안정(33.3%), 물리환경(31.0%), 직무요구(12.3%), 일-삶의 균형(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직종별 위험 수준을 살펴보면, 물리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직종별로는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55%)과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46%)의 위험수준이 높았음. 직무요구에 대해서는 12.3%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직종별로는 판매 종사자(14%)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13%)의 위험 수준이 높았음. 다음으로 직무자율성 결여와 사회적지지 부족 항목에서는 위험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직종의 특성상 업무수행과정이나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 상사나 동료의 업무수행 도움을 측정하는 항목인데 해당 직종의 경우 대부분 개인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됨. 다음으로 직업불안정성의 경우 위험 수준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이었음. 직종별로는 판매 종사자(38%),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6%),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3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28%)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보상부적절의 경우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음.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73%로 가장 위험수준이 높았음. 마지막으로 일-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이 7.8%로 높지는 않았음. 직종별로는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13%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저녁시간에 일을 하는 직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2) 감정노동

□ 우선, 감정규제와 관련한 항목의 위험수준은 25.3%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위험수준이 3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감정부조화와 관련항 항목의 위험수준은 62.0%로 매우 높았음. 모든 직종에서 위험수준이 높았지만 특히, 판매 종사자(68%)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67%)의 위험수준이 높았음. 다음으로 조직모니터링 관련 항목의 위험수준은 7.5%로 낮았음. 다만,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위험수준이 1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보호체계 관련 항목의 위험수준은 69.5%로 매우 높았음. 전 직종에서 위험수준이 높지만,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81%)과 판매 종사자(70%)의 위험수준이 특히 높았음. 이동노동 관련 직종의 경우 사실상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상당히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다음으로 고객의 정신적 성적 폭력에 대한 위험수준은 7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76%), 판매 종사자(75%),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55%) 순으로 나타남.

3)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소속 사업체(관련 기관)로부터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는지 질문한 결과 잘 제공받는 편임이 5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임(28.5%), 매우 잘 제공받음(11.0%), 전혀 제공받지 못함(4.5%)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상대적으로 잘 제공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반면,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제공받지 못한다는 응답(별로+전혀 제공받지 못함 5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응답자에게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남.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이 그렇다는 응답이 57%로 현저하게 높았고, 다음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37%)로 나타남.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16%)와 판매 종사자(10%)는 상대적으로 현재 하는 일이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음.

□ 더 나아가 응답자에게 현재 하는 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39.8%,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35.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24.8%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34%)과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3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4) 건강상 문제

□ 현재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1주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3%가 있다고 응답함. 사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됨. 특히,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13%가 부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업무상 부상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치료에 요구되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비용지출이 6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회사가 보상(공상 처리)가 22.9%,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았음 11.4%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와 판매 종사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음은 프레젠티즘에 관한 사항임. 응답자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34.5%가 있다고 응답함. 직종별로는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가 23%로 가장 적었음.

□ 다음은 최근 12개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와 업무상 관련 여부를 질문한 결과임.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상지 근육통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전신 피로(50.5%), 하지 근육통(45.0%), 두통 및 눈의 피로(38.8%), 요통(27.5%), 한랭질환(15.8%), 온열질환(15.3%), 불안감(12.0%), 우울감(9.0%), 손상(7.0%), 피부문제(4.0%), 청력문제(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해당 건강상의 문제가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음. 이는 응답자들이 최근 12개월 동안 본인에게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부분 현재 하는 일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줌. 우리나라 전체 여성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 응답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건강상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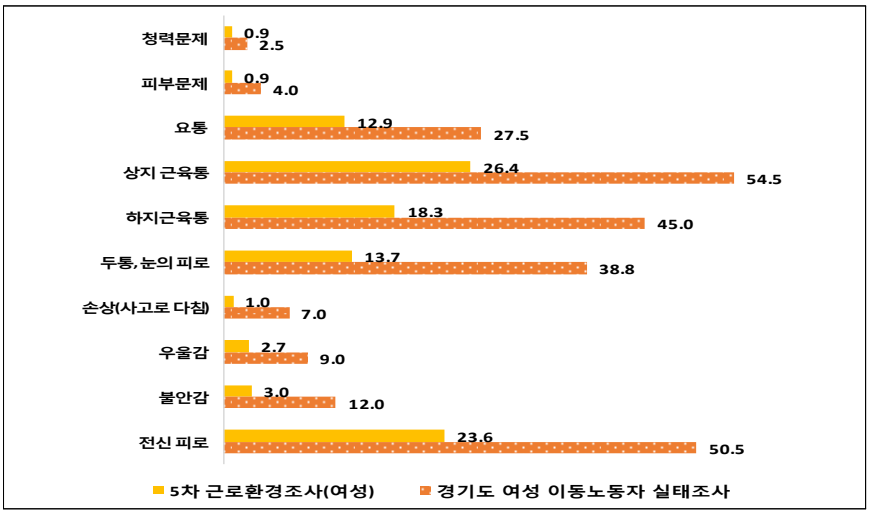

자료: 안전보건공단(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통계표

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

1) 일자리 지속성

□ **현재 직종에서 일한 기간**: 10년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1.0%), 3-5년 미만(14.5%), 1-3년 미만(13.0%), 1년 미만(10.0%)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속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현재 직장 재직 기간**: 10년 이상이 3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5-10년 미만(20.8%), 1-3년 미만(16.5%), 3-5년 미만(14.3%), 1년 미만(13.8%)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노동전망**: 현재 일자리에서 앞으로 더 일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58.8%로 과반수를 차지함. 다음은 5년 이상(15.8%), 3-5년 미만(13.0%), 1-3년(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87.6%가 앞으로도 최소한 3년 이상 현재 일자리에서 일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일자리 만족도

□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3.32점으로 평균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높았음. 직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전반적 만족도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3.37점),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3.27점), 기타 판매 서비스 관련 직종(3.18점) 순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의 자율성과 권한 부문이 3.7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하고 있는 일의 내용(3.43점), 일-생활 균형(3.42점), 일하는 시간(3.41점), 일자리의 안정성(3.30점), 개인의 발전가능성(3.12점) 순으로 나타남. 임금/소득 만족도가 2.84점으로 가장 낮았음.

□ **노동조합 관련 사항**: 노동조합이 없다는 응답이 93.3%로 대부분을 차지함.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2.0%에 불과했음. 만약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36.4%가 있다고 답변함.

마. 정책수요

□ **경기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이동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이동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3.32점), 이동노동자 건강증진 사업(3.26점),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쉼터 운영(3.05점), 지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2.95점)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타 직종에 비해 쉼터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이 3.44점으로 중요성 점수가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3.13점),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3.10점),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3.04점),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서비스 제공(2.85점) 순으로 나타남. 모든 직종에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이는 혼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됨.

〈그림 2〉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중요도(전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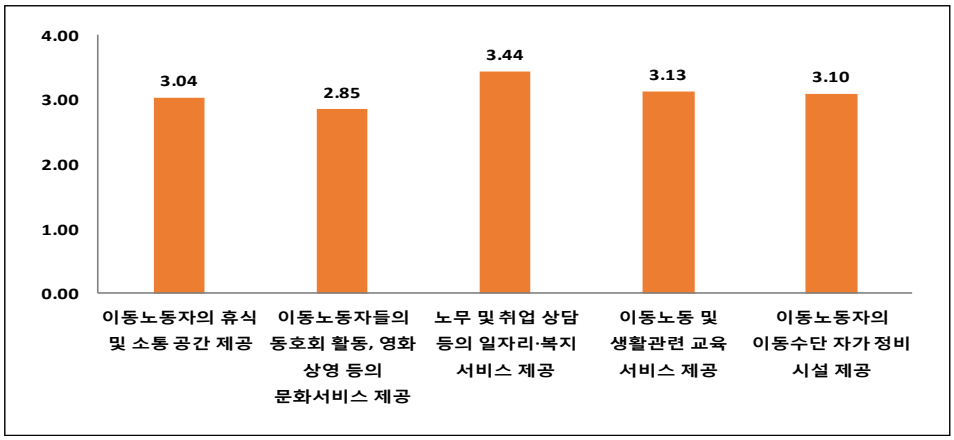

주 : 각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분석함

□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중요도**: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이 3.31점

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사업(3.18점),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3.17점),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캠페인 등)(3.12점)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평균 점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음. 이는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감정노동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4. 이동노동자 직종별 사례분석

가.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 임금은 기본급 없이 강의 수수료에 따라 산정되고,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이들은 코로나 이후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줄어든 소득 부담은 오롯이 개인 부담으로 남는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동과 관련해서는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유치원, 방과 후 등 집단별 교육을 하루 1~2회 진행하지만, 장거리 이동이 많고 대기시간도 길어 주로 차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했음. 그에 반해 학습지교사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일정 지역을 맡고 있어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로 해당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지역 안에서는 주로 도보로 이동하였음. 중간에 대기해야 할 경우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짧고 긴 경우 1시간 정도로 차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차에서 수업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했음. 차가 없는 경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등에서 업무를 보거나 쉬었음.

□ 이들 직종에서는 이동하며 일하는 어려움으로 화장실과 주차문제를 주요하게 제시함. 가구를 방문하며 일하지만, 고객의 집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음. 주차의 경우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이나 빌라 주거 지역에서는 주차의 어려움이 상당했음. 그 외에도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은 어려움을 언급함. 학습지교사의 경우 차가 없는 경우에는 한여름, 눈・비올 때 무거운 교재들 들고 다니는 어려움을 호소함. 또한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고객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이면서 동시

에 고객 대면 접촉도가 높은 고객 응대 노동자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 교사들은 학부모 등을 응대하는 과정에서의 감정노동이 상당하고 고객들이 교사로서 존중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무시감이 높다고 밝힘.

□ 정책수요와 관련해서는 학습지교사와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학습지교사들은 일정 지역 안에서 주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인이 주로 일하는 지역의 근처에 없다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에 반해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이동대기 시간이 길다보니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 학습지교사와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쉼터에 대해 냉난방이 잘 갖춰지고, 차를 제공하고, 수업을 준비하거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의 장소를 희망함.

나. 판매 종사자

□ 임금은 기본급 없이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의 수수료에 따라 산정됨. 이들은 회사를 통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의료보험은 주로 배우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해 있었음. 이들은 자신들의 일과 관련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서라도 직장인처럼 사회보험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음.

□ 판매 종사자들의 이동노동현황은 고객을 만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의 특성상 고객방문 현황에 따라 달라졌음. 방문판매원은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전달해줘야 해서 매일 2, 3명의 고객을 만났음.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건수로 목표치를 설정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였음.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 고객을 오랫동안 만나고 여러 번에 걸쳐 만나다 보니 1일 1명에서 2,3명의 고객을 만났음. 이러한 판매 종사자들의 고객방문 특성은 이들의 이동노동시간에 그대로 반영됨. 방문판매원의 경우 이동시간이 업무시간과 유사하게 50%를 차지했고, 보험모집인은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하루 2~3시간 정도 소요됨. 판매 종사자들 가운데 대다수(6사례)가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결합하거나 자가용만을 이용해 이동했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만이 교통비가 최소로 15~20만원 정도였고 그 외의 경

우에는 약 30~70만원이 소요됨.

□ 판매 종사자들은 이동하며 일하는 어려움으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유류비에 대한 부담과 운전에 대한 피로감, 교통사고 발생 등을 호소함. 판매 종사자들도 고객 대면 접촉도가 높아 이동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고객 응대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겪는 감정노동,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주를 이뤘음. 회사에서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해당 고객에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피해자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음.

□ 판매 종사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마련된다면 차를 제공하는 카페공간과 같은 분위기에 쉬거나 수면할 수 있는 공간, 업무지원 공간, 동종업계 종사자 모임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컸음. 그리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이 제공되고, 성희롱 관련해서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다.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 가스 점검원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 계약직 노동자로 4대 보험에 가입했음. 대부분의 가스 점검원은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이 산정되고 보너스(연 100%)를 받고 있었음.

□ 가스 점검원의 이동노동 현황을 보면 점검, 검침, 고지서 배부 업무에 따라서 이동 동선과 이동시간이 달라졌음. 가스 점검원의 일의 상당부분이 이동하는 시간임. 검침과 고지서 배부의 일은 이동시간이 대부분이고, 점검 또한 한 고객 당 방문 시간이 2~5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 가스 점검원들은 주로 자신이 배당받은 지역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하며 일했음.

□ 가스 점검원은 이동거리에 따라 식사 및 대기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나뉘었음. 집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고객들이 보통 12시~2시 사이에 집을 많이 비우기 때문에 점심과 휴식을 집에 와서 취했음. 집에서 먼 경우에는 시간, 경비,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음. 주로 자신의 차에서 업무처리도 하고 챙겨간 도시락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쉰다고 밝힘.

□ 가스 점검원은 이동노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날씨로 인한 어려움, 주차 문제, 화장

실 문제, 계단 내려오다 겪는 사고, 감정노동,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을 이야기했음. 또한 고객들이 점검 약속을 안 지키거나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힘. 또한 최근에는 고객 방문 시 애완견으로 인한 위협감을 겪고 있었음. 그 외에도 오랜 시간 검진기와 PDA를 들고 다니면서 일하다 생긴 어깨 통증과 오랜 시간 걸으면서 생긴 족저근막염은 기본 질환이라고 밝힘. 가스 점검원들은 개선사항으로 안전점검 점검률을 낮춰야 한다고 밝힘. 높은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 미검 고객을 수차례 방문해야하고 그럴 경우 검침원들의 이동거리와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임.

□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겨도 쉼터에 들어가 쉴 시간이 없어 잘 이용할 것 같지 않다고 밝힘. 만약 이동노동자 쉼터가 근처에 생긴다면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 누워 쉴 수 있는 수면 공간, 안마기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라. 기타 판매 ·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 대부분이 회사를 통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의료보험은 주로 배우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해있고, 국민연금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였음. 임금은 대부분 기본급 없이 배달 및 점검한 상품의 수수료에 따라 산정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줄었고, 감염의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집을 방문・점검해야 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도 상당했음. 다친 경우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이 없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함. 또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친 경우 무급으로라도 몸이 나을 때까지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아픈 몸으로 나와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함.

□ 이동노동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을 대면하는 경우에도 대면시간에 따라 일하는 특성과 이동 시간 등이 달라졌음. 녹즙 배달원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배달하는 경우로 이동시간이 80~90%를 차지함. 카드 배달원은 고객을 현관문 앞에서 짧게 대면하는 경우로 이동시간이 80~90%를 차지함. 그에 반해 방문 점검원은 대여상품 필터 교환 및 청소 작업을 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고객의 집안에서 보내고 있어 고객 접촉도가 높고 이동 시간은 하루 1~2시간, 2~3시간, 3~4시간까지 다양했음. 녹즙 배달원은 아이스박스에 담긴 상품을 배달하는 일로 자가

용이 필수적이며 자가용을 이용해 해당 지역까지 가서 도보로 이동했음. 카드 배달원은 근거리 지역 배달 업무를 맡아 주로 도보로 이동했음. 방문 점검원은 방문 점검 장비가 20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점검 지역까지 이동하고 도보로 근처 고객들을 방문했음. 방문 점검원은 15만원에서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주유비를 쓰고 있었음. 배달원은 이동시간 중 대기시간이 없는 특성을 보였음. 방문 점검원은 대기시간이 발생할 경우 주로 차에서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했음.

□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경우 이동노동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카드 배달원은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면, 녹즙 배달원은 새벽시간대에 일하다 보니 졸음,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으슥한 골목 및 남성/술 취한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함. 방문 점검원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차문제를 호소함. 그리고 주차문제와 함께 무거운 정비장비를 들고 이동하는데 따른 문제를 이야기함.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중 고객을 대면하는 경우에는 고객대응의 어려움, 감정노동, 성희롱도 겪고 있었음. 또한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애완견으로 인한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방문 점검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애완견에게 물린 경우도 있었음. 배달원은 겨울에 일하면서 빙판에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방문 점검원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다쳤고, 교통사고를 겪기도 했음.

□ 기타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마련된다면 차를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기를 바랬음. 새벽에 일하는 녹즙 배달원은 자신들처럼 야간이나 새벽에 일하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개방하고, 수면 공간을 마련해주고 간단한 식사도 가능한 공간이기를 바랐고 방문 점검원은 이동노동자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람. 시설 외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지원, 취업상담 등 제공에 관한 의견도 있었음.

5. 결론

가. 연구결과 논의

□ 첫째,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들이 다수인 이동노동 직종의 특성은 일하는 장

소가 가구 내, 즉 '고객의 집' 인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대면서비스 직종에서 크게 나타나는 감정노동, 고객에 의한 성희롱,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더 나아가 사회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과거와 달리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 본 연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호소한 것은 이른바 '반려동물의 문제' 였음.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를 경험한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남. 이처럼 주로 가구를 방문하면서 일하는 여성 이동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환경의 위험요소는 남성노동자와 차이가 있었음.

□ 둘째, 이동장소는 주로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주된 직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인 '고객의 집' 의 방문을 전후 해 고용주의 사업체, 실외(길거리, 아파트 계단 등), 커피숍 등 공공장소, 자동차 등 교통수단 등을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호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장소로 움직이는 배달직종과 달리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대부분 '시간을 약속' 하고 방문하는 형태로 일을 하였음. 이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기 전후의 시간에는 근처의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음. 경기도 조례에 제시된 이동노동자 쉼터의 5가지 기능 중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은 3.44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요성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이동노동자의 휴식 소통 공간 제공의 중요성은 3.04점으로 점수가 낮았음. 이는 혼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됨.

□ 셋째, 이동수단은 기본적으로 자가용을 가장 많이 사용함. 사실상 대부분의 직종은 자가용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봐도 무방함. 여성 이동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이동해 주차한 후 도보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음. 하루 평균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2-4시간미만이 42.8%로 가장 많았음. 이동수단으로서 자가용의 의미도 있지만, 학습지교사, 렌털 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물건의 무게가 상당해 업무상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도 중요하였음. 한편, 자가용은 이동수단이면서 업무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였음. 고객과의 약속시간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다음 방문 전후에 시간이 남는 경우 본인의 차량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매번 주

변의 카페 등 다른 공간을 활용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임. 그러나 차량 유지비 등 이동수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더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주차문제의 어려움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 넷째, 여성 이동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모든 항목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명 중 1명 가까이가 상지근육통, 전신피로, 하지근육통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요통의 경우도 27.5%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음. 실제로 응답자들은 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는 대부분 현재 하는 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현재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1주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3%가 있다고 응답함. 사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 이동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다섯째, 이동하면서 일하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는 어려움도 있었음.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날씨(폭염, 폭설, 혹한, 폭우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외부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집안을 방문하는 경우 일상적인 어려움은 배가 되는 것으로 보임. 즉, 날씨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에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의 경우 비에 젖은 몸으로 여러 가지 도구(물건)를 들고 고객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또한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적시에 화장실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통적일 수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생리 등으로 더욱 일상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음.

□ 마지막으로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법적인 지위에서 비롯되었음.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였음. 이로 인해 이동하면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소득감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 이동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일하는 직종의 특성 등으로 일하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기관이 사실상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나.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성다수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은 이동거리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뉨. 학습지교사, 가스 점검원, 배달원처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지역에서 주로 일하는 경우와 교육 교구 방문강사, 보험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처럼 일정한 지역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동하면서 일하는 경우로 나뉨. 장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반면에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이동노동자의 이동 특성을 반영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더불어 고객 접촉도가 높은 여성 이동노동자는 감정노동, 고객 성희롱 문제 등도 겪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보호**: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즉,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사업주 책임'을 묻기 어려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가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향후 사회보장 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편입시키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이 직종별로 선별해 '특례조항'을 만드는 방식임. 그러나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가입률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식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방안**: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간을 의미함. 그러나 이동노동자들은 '쉼터'의 기능을 '휴식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쉼터'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생각됨. 더 나아가 여성 이동노동자들은 쉼터가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 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시군 단위의 설치로는 대다수의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였음. 이는 개별화되어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이동노동자의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를 직종별로 전문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 경기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쉼터) 또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지원센터)로 명시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을 명칭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다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들이 다수인 직종이 사실상 배제되지 않도록 성 인지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단지 '남녀휴게실' 을 별도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직종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이동노동자이면서도 고객 접촉도가 높은 경우 감정노동자로서의 특성이 강하므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여성들이 주로 이동노동자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이른바 '고객' 을 상대하는 일이 많음. 그런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즉, 보험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고용노동부에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힘. 대부분 문제해결은 동료들끼리 경험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사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음. 성희롱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감정노동 예방 및 지원 사업 확대**: 감정노동자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과 직종별 특

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체계의 위험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많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제도나 절차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감정노동 보호체계의 위험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개별화되어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노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됨. 앞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를 직종별로 전문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 예방 및 지원 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즉, 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직종별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

□ **여성 이동노동자 안전과 건강지원 사업**: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동노동자는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머물며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정책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역노동자에 초점을 두되,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노동자 안전과 건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노동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임. 이동노동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며, 날씨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이동함으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큼.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 관련 건강상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남.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직종에 따라서는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직종별 노동환경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도민들의 이동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 이에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감정노동, 성희롱 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근거해 추가적인 인식개선 사업의 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고객들도 노동자와의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둘째, 외부에서 방문하는 이동노동자에게는 반려동물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세 번째로 가구에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임. 이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20-04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

발 행 인 정 정 옥
발 행 일 2020년 6월 30일
발 행 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홈페이지 www.gfwri.kr
인 쇄 더조은프린트 1544-1466

ISBN 978-89-6432-488-2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